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4단계 BK21 사업
『기후변화대응형 친환경에너지자원 스마트개발
글로벌리더 양성 교육연구팀』
자체 운영 규정

2021. 2. 22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4단계 BK21 사업 분야 한양대학교의 ‘기후 변화대응형 친환경에너지자원 스마트개발 글로벌리더 양성 교육연구팀’의 교육, 연구, 장학 및 기타 효율적인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본 사업팀의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및 한양대학교 연구관리 지침을 따른다.

제3조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2020년 9월 1일 ~ 2027년 8월 31일(7년간, 1~8차년도)이며, 개별 사업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단, 마지막 차년도는 2027년 3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사업팀의 구성 및 운영

제4조 (사업팀장) ① 사업팀장은 ‘기후변화대응형 친환경에너지자원 스마트개발 글로벌리더 양성 교육연구팀’의 총괄 책임자가 된다.

제5조 (사업팀장의 역할) ① 사업팀 참여교수의 진, 출입 관리, 신입교수 총원 요청, 신진연구인력 채용 및 산학협력전담인력을 결정한다.

② 사업팀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를 균형적으로 배분할 권한
2. 사업팀의 재무를 담당할 사무원을 고용할 권한
3. 사업팀 구성원에게 운영비를 분배할 권한

제6조 (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참여교수)가 평가하여 추천된 전일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업팀장의 인가를 통해 선발한다.

- ② 석사는 4기, 박사는 8기, 석박사통합과정은 12기까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휴학기간 제외)
- ③ 참여대학원생은 연구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라 참여대학원생과 지원대학원생으로 구분한다.
- ④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4단계 BK21 사업 실적 제출의 대상이 된다.
- ⑤ 사업기간 동안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학기단위로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의한 검증작업 및 자체확인을 통하여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이 있을 경우, 해당 참여대학원생을 사업에서 제외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은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대학원생)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인건비를 지원 받는 학생을 말하며, 참여 연구실별로 참여대학원생과 교수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실별 장학금 총예산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참여교수는 각 연구실별로 참여 대학원생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대학원생과 지원액을 결정한다.

- ②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은 석사 월 70만원 이상, 박사 월 130만원 이상, 박사수료생은 월 100만원 이상을 학기별로 개인별 계좌 입금의 형태로 지급한다.
- ③ 박사과정 지원대학원생은 국내외 학술지 및 학술대회에 각각 연1회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제8조 (참여대학원생 평가) ①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지원대학원생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을 할 수 있다.

- ② 평가 항목(총점 100점)
 1. 논문 및 학술발표 60점 (SCI(E) 논문, 국내논문, 학술발표)
 2. 업적 30점(학술대회 참가, 특허, 기술이전 등)
 3. 4단계 BK21 참여율 10점(행사 참여 등)

제9조 (참여교수 선정 기준) ① 교육부 훈령 제353호,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사업팀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팀의 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팀에 참여할 수 있다.

1. 휴직,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인 교수
2. 연구년 또는 안식년 중이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
3. 교육부 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연구 참여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교수

② 사업팀의 참여교수는 본 대학의 자원환경공학과 소속으로,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서 정의하는 전일제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에 속해야 한다.

제10조 (참여교수 교체 기준) 참여교수의 교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참여교수 자체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 ①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
- ② 연구실적 및 사업 참여 실적 저조
- ③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④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조 (참여교수 평가 기준) ① 과제 연차별로 사업팀장 및 참여교수의 연구실적 및 사업팀 수행 기여도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책정된 성과급 예산 범위 내에서 참여교수의 사업단 기여도를 평가하여 1인당 연 480만원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③ 평가 항목(총점 100점)

1. 연구성과 40점(논문, 국외 및 국내 학술발표 등)
2. 기타성과 30점(연구비 수주액, 특허, 기술이전, 참여대학원생 논문 등)
3. 참여도 및 대외 활동 30점(회의참석·제안서 작성과 같은 사업팀 운영에 관한 활동, 사업팀 주관행사·사업단 홍보와 같은 대외활동 등)

④ 평가 항목으로 반영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팀장은 최고 10%까지 추가 부여할 수 있다.

⑤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참여교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이를 참여 교수 변경 및 추가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 (신진연구인력 활용 지침)** ① 소정의 임용 조건을 충족한 박사후연구원 및 계약교수를 임용할 수 있다.
- ② 신진연구인력은 참여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팀장의 서류 평가로 선발한다.
- ③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는 각 연구실로 배정된 4단계 BK21 사업 인건비 예산 내에서 월 30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 ④ 계약 기간 내 게재된 SCI(E)급 논문 및 특허 등록, 연 1건 이상을 권장한다.
- ⑤ 신진연구인력은 소속 사업팀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소속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⑥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⑦ 사업팀은 신진연구인력의 안정적 연구활동을 보장하고, 연구공간 및 연구지원을 한다.
- ⑧ 계약 갱신 시 운영위원회를 통해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팀의 임용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체 가능하다.

- 제13조 (산학협력전담인력 활용 지침)** ① 산학협력전담인력은 참여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팀장의 서류 평가로 선발한다.
- ② 자원환경공학 과정과 관련된 산업체를 발굴하여,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원들과 참여교수들의 연구 수행 지원 등 산학 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매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 ③ 산학협력전담직원에게 지급할 보수는 4단계 BK21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④ 산학협력전담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⑤ 계약 갱신 시 운영위원회를 통해 산학협력전담인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팀의 임용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체 가능하다.

-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위원장은 사업팀장으로 하고, 운영위원은 참여교수 전원으로 한다.
- ② 사업 운영을 위한 결정 필요 사항 중 한양대학교 학칙 및 4단계 BK21 사업 규정 외의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제 3장 국제화경비

제15조 (국제화경비) ① 참여 연구실별로 평가 등급에 따라 연구실별 장학금과 국제화 경비의 총예산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참여교수는 각 연구실별로 지원액을 결정한다.
② 경비 지원은 4단계 BK21 규정 및 학교 지원 규정에 따르며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단기해외연수) ① 사업 참여 인력의 해외 학회 논문발표, 대학원생의 해외 인턴십, 해외 석학 초빙 등 기타 국제협력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연구업적이 우수하거나 ‘참여대학원생 경쟁체제 유지를 위한 사업팀 운영 계획’에 따라 우수한 학생을 참여교수가 추천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한다.
1. 대학원생의 경우 발표별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단, 권위는 국제 전시회 출품은 국제학회 참가와 동일한 기준 적용)
2. 교수의 경우 참여대학원생과 동행하는 지도교수(학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 참여하는 경우 지원 가능)
3.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4. 단순참가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 총 3인 이내 가능)
③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회가 주관하며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4개국 이상 참여,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을 충족하는 학술회의에 참가하는 논문발표자에게 지원하며, 특별한 경우 지도교수 추천을 받아 사업팀장이 결정한다.

제17조 (장기해외연수) 지원대상은 사업팀 소속 참여대학원생으로 학업성적, 연구 진행성과, 외국어 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기타 소양이 우수한 학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얻은 자로 한다.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교내 연구관리지침에 따라 지원한다. 단, 당해연도 예산에 따라 지원이 불가하거나 조정될 수 있다.

제18조 (해외석학초빙) ① 해외석학초빙은 해외 학자 및 전문가, 유명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당해연도 해외석학초청을 희망하는 참여교수는 사업팀에 신청하고 사업팀장은 연구분야와 해당분야의 저명도를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초빙된 해외학자는 사업팀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 대학원생의 국제협력 연구에 도움이 되는 공동연구수행, 자문 등의 활동 및 세미나/특강을 통하여 참여 대학원생의 국제적인 전문 습득과 연구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③ 지원금액은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만 지급 가능하며,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비와 체제비(본교 여비 규정에 따름)를 지원한다.

제 4장 기타

제19조 (잔액) 당해년도 참여교수에게 배정된 예산의 미집행으로 인한 이월잔액은 사업팀에서 회수하여 새로운 사업계획에 따라 재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